

의안번호	제657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8월 23일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6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8월 23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조성하는 당해 펀드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목적
 -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관련 분야 창업기업의 모험자금 확충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전략적 성장 지원
- 출자근거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- 기대효과
 - 친환경 정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세계적 기조와 정부 및 우리도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맞춘 전용펀드 운영으로,
 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, 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

3. 관계법령 발체 : 불 임

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 주무관	전화
	혁신창업팀	이혜란	이나겸	천영혜	220-3232

사업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																						
출자대상	○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 (친환경·에너지 분야) －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 －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, (주)에코프로,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, 비나텍, 대구은행, 전북은행, 한국자산신탁,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 － 특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 －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 － 펀드규모 : 300억원 · 모태펀드 150, <u>충청북도 20</u>, (주)에코프로 67,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5, 비나텍(주) 10, 대구은행 10, 전북은행 15, 한국자산신탁 10,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 3 － 투자대상 : 친환경·에너지 분야의 창업기업 － 도 투자조건 : <u>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</u>																						
출자사업비	○ <u>출자 예정금액 : 2,000백만원(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)</u> ○ 출자내용 (단위 : 백만원) <table> <tr> <th>구 분</th><th>총 계</th><th>'24년</th><th>'25년</th><th>'26년</th><th>'27년</th></tr> <tr> <td>총 계</td><td>20</td><td>5</td><td>6</td><td>6</td><td>3</td></tr> <tr> <td>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</td><td>20</td><td>5</td><td>6</td><td>6</td><td>3</td></tr> </table> 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					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총 계	20	5	6	6	3	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	20	5	6	6	3
구 분	총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																	
총 계	20	5	6	6	3																		
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	20	5	6	6	3																		

출 자 필 요 성	○ 친환경·에너지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펀드 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○ 도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충북도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유니콘 기업* 육성 발판 마련 * 기업가치 1조원 이상, 창업 업력 10년 이내의 비상장 스타트업
근거법령	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1. 벤처투자조합 2. 모태조합 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○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은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주목적 투자를 조건으로 결성된 펀드로, 충북도에서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투자조합임 - 충북도 투자조건으로 출자액의 3배 이상 도내 투자를 제안하였으며, 친환경·에너지 분야 등의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로 충북도 정책방향에 부합 ○ 도내 유망 친환경·에너지 분야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이 될 모험자금 확충이 시급하여 전용 펀드 결성 타당 ○ 창업기업을 위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첨부자료	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①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: 해당없음

②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도내 유망 친환경·에너지 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이 될 모험 자금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, 이에 부응하는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용 펀드 조성이 필요
- 결성 예정인 친환경·에너지 분야 펀드에 대해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③ 펀드 출자금 검토

○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300	100
LP(출자자)	충청북도	20	6.7
	모태펀드	150	50
	(주)에코프로	67	22.4
	포항테크노밸리	15	5
	비나텍(주)	10	3.3
	대구은행	10	3.3
	전북은행	15	5
	한국자산신탁	10	3.3
GP(운용사)	에코프로파트너스	3	1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운용사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
※ 근거법령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	구분	출자	2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 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유니콘 기업 육성 발판 마련
- 충청도내 유망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초기 모험자금 확충

□ 출자개요

-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
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
 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, 에코프로, 포항테크노파크, 비나텍, 대구은행, 전북은행, 한국자산신탁, 에코프로파트너스
 - 특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
 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(8년, 4년 투자 4년 회수)
 - 펀드규모 : 300억원
 - 모태펀드 150, 충청북도 20, (주)에코프로 67,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15, 비나텍(주) 10, 대구은행 10, 전북은행 15, 한국자산신탁 10, (주)에코프로파트너스 3
 - 투자대상 : 친환경·에너지 분야 등의 창업기업
 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 3배(6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□ 산출기초

- 조합원 출자약정 : 300억원(모태펀드 150, 충북도 20, 기타 130)
- 도 출자계획 : 20억원('24년 5억, '25년 6억, '26년 6억, '27년 3억)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 】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모태펀드 (국비)	도비	기타
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	300	150	20	130

□ 기대효과

- 친환경·에너지 분야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관련 분야 창업기업의 모험자금 확충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전략적 성장 지원
- 향후 IPO 및 기술판매(라이센싱)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·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여

□ 출자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금번 조성하는 친환경·에너지 분야 펀드는 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련 분야 창업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조성한 펀드로, 미 승인시 펀드 결성 무산 및 향후 충북도의 펀드 결성·참여에 어려움 발생 예상
-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이 자금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소멸 및 창업생태계 구축 지연

관 련 법 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1.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
12. 벤처투자조합
13. 벤처투자모태조합
14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15.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